

# 파워적립식 패키지 서비스약관

제정일 2011. 2. 18

개정일 2011. 4. 29

2016. 5. 18

2018. 10. 8

## 제1조 (약관의 목적)

본 약관은 고객이 미래에셋대우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가 제공하는 적립식패키지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고객과 회사 간의 권리, 의무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적립식패키지 서비스』(이하 "적립식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고객이 사전에 지정한 조건에 따라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회사가 자동으로 적립대상자산을 매수하고,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후에는 회사가 자동으로 적립자산을 매도하여 매도대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2. 『적립대상자산』이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특정 매수대상 자산을 말한다.
3. 『적립자산』이라 함은 고객이 적립식 서비스에 가입한 후 적립한 자산을 말한다.
4. 『적립목표』라 함은 고객이 지정한 적립예정금액, 목표수익률 등의 목표조건을 말한다.
5. 『적립기간』이라 함은 적립식 서비스를 통하여 적립대상자산을 최초로 매수한 날부터 고객이 설정한 만기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제3조 (적립식 서비스의 가입 신청)

- ① 적립식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고객은 서면을 통하여 적립식 서비스 가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적립식 서비스 약정서를 통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1. 적립대상자산/분산투자정보
  2. 적립기간/적립목표
  3. 지급방식
- ② 제1항에 의한 고객의 신청에 대하여 회사가 이를 접수한 때부터 적립식 서비스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 ③ 고객은 하나의 계좌에서 수익증권을 선택하여야 하며, 적립식 서비스 약정서에 기재된 범위 내에서 다수의 수익증권을 적립할 수 있다.

## 제4조 (적립대상자산)

- ① 본 적립식 서비스에서 매매 가능한 자산은 회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으로 한정한다.
- ② 제1항에서 정하는 적립대상자산의 매매거래 중단 등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제5조 (적립방식)

- ① 고객은 시기 및 금액 제한 없이 임의로 적립이 가능한 자유적립식 형태로 적립한다.
- ② 고객은 CMS자동이체서비스 또는 자동대체서비스를 신청하여 별도의 출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출금계좌에서 적립식 서비스 계좌로 매월 지정일에 적립금 납입이 이루어진다.
- ③ 제2항의 경우 고객은 자금 납입일에 지정출금계좌의 예탁잔고가 총출금액에 부족할 경우 해당 적립기의 자금납입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 제6조 (적립대상자산 자동매수)

- ① 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되기 전까지 납입된 적립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고객이 제3조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방법으로 적립대상자산에 대한 자동매수를 진행한다.
  2. 17시 경과 후 제10조 제1항에 따라 추가적립금이 납입된 경우 적립금이 납입된 날 이후에 최초 도래하는 영업일에 적립대상자산에 대한 자동매수를 진행한다.
  3. 납입된 현금이 10,000원 미만이거나 적립대상자산의 최소매수단위에 미달할 경우 회사는 적립대상자산을 매수하지 아니하고 예수금으로 취급한다.
- 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매수가 되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객은 회사에 적립대상자산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감독기관의 지시감독에 의하여 적립대상자산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
  2. 판매물량 부족 등 회사 또는 자산운용회사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립대상자산을 매수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해산 등의 사유로 적립대상자산을 더 이상 매수할 수 없는 경우

#### 제7조 (적립목표 및 적립기간 지정)

- ① 고객은 적립식 서비스 가입 시 적립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적립기간은 최소 1년 이상으로 한다.
- ② 고객은 적립식 서비스 가입 시 적립예정금액, 목표수익률을 지정할 수 있고, 언제든지 회사에 적립목표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 적립식 서비스 약정서에 기재된 최소 및 최대요건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 ③ 고객의 적립목표의 달성여부는 적립기간이 1년을 경과한 시점부터 판단되며, 그 이후 적립목표가 적립기간 만료 이전에 달성된 경우 고객의 적립기간이 만료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 제8조 (지급방식)

- ① 고객은 목표달성 시 적립금의 지급방식으로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야 한다.

1. 약정해지 및 전액환매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을 현금화 하며, 약정은 해지된다.
  2. 약정유지 및 전액환매 : 적립자산을 현금화 하며, 약정은 계속 유지된다.
  3. 약정해지 및 잔고유지 : 적립을 중단하고, 적립자산은 현금화 없이 유지되며, 약정은 해지된다.
  4. 약정유지 및 잔고유지 : 적립자산은 현금화 없이 유지되며, 약정도 계속 유지된다.
  5. 그 밖의 고객이 적립식 서비스 가입 시 지정한 지급방식
- ② 지급방식 중 '약정유지'를 선택할 경우, 적립목표 종류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약정이 유지된다.
1. 적립목표를 '적립만기일' 또는 '저축기간'으로 지정할 경우, 적립목표 달성 이후 기존 저축기간만큼 연장된 적립만기일까지 분산투자매수가 된다.
  2. 적립목표를 '목표금액' 또는 '목표수익률'로 지정할 경우, 적립목표 달성 이후 기존 저축기간만큼 연장된 적립만기일까지 분산투자매수가 되지 않는다.
- ③ 고객은 자동이체대체서비스를 통하여 별도의 입금계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적립식 서비스 계좌에서 입금계좌로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이 이루어진다.

#### **제9조 (적립자산의 자동매도)**

고객이 지정한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경우 회사는 적립식 서비스 계좌에 납입된 적립자산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약정유지 및 전액환매' 또는 '약정해지 및 전액환매'의 경우 회사는 적립기간이 만료되거나 적립목표가 달성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영업일날 고객의 적립자산을 모두 매도한다.
2. 제6조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적립자산을 매도할 수 없는 경우 회사는 그 사실을 영업점 및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고 고객에게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하며, 고객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258조에 따른 환매 등의 조치를 회사에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 (중도입출금)**

- ① 고객은 본인의 판단 하에 적립식 서비스 계좌에 적립금을 추가로 납입할 수 있다.
- ② 고객은 본인의 판단 하에 적립식 서비스 계좌의 적립자산을 매도하거나 적립금을 출금할 수 있다.

#### **제11조 (약정해지)**

고객은 서면 또는 유선 등을 통하여 적립식 서비스 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 **제12조 (통지의 방법)**

- ① 회사의 고객에 대한 통지는 서면 또는 전화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행한다.
- ② 서면에 의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그 밖의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락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

### 제13조(약관 및 주요내용의 변경)

-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 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개정 등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 약관의 시행일 전에 게시한다.
- ② 제1항의 변경내용이 고객에게 불리한 것일 때에는 이를 서면 등 고객과 사전에 합의한 방법으로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존 고객에게 변경 전 내용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고객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회사는 제2항의 통지를 할 경우 "고객은 약관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④ 고객이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 ⑤ 회사는 약관을 회사의 영업점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두거나 게시하여 고객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고객이 약관을 확인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14조 (기재내용 변경사항 통지)

고객은 주소, 직장 그 밖의 연락처, 이메일, 전화번호 등 회사에 통지한 내용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전화 또는 서면을 통해 통지하여야 하며, 고객이 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제15조 (분쟁 조정 및 관할법원)

- ① 적립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고객은 회사와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회사의 민원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한국금융투자협회 등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 ② 적립식 서비스와 관련하여 회사에 소송을 제기할 경우 그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 제16조 (정보제공)

회사는 적립식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고객의 동의를 얻어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제휴은행 및 금융결제원에 제공할 수 있다.

### 제17조 (약관의 적용)

- ①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관계법규에도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상관례 및 관련약관에 따른다.

- ② 이 약관에 의한 거래 중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는 '전자금융거래이용에 관한 기본약관' 및 전자금융거래법령이 우선 적용된다.
- ③ 적립대상자산이 수익증권이므로 '수익증권저축약관'과 함께 적용된다.